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관련 실·국장,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안전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